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 26.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4,77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 배우자 B과 그 소유의 [redacted]구 C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4,060,000원, 지방교육세 34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4,079,480원, 지방교육세 349,670원 합계 4,429,1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5. 4. 16. 가산금을 부과한 독촉고지서(2015. 4. 14.자)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 12. 납부 및 독촉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신고납부방식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6. 18.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다음날인 2015. 6. 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31.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나.항의 납부고지서에서 누락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차례대로 19,480원과 1,670원)의 근거,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새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D의 취득세가 이미 납부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D과 가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는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취득세 등 문제를 문의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매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여에 따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대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참조).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피고의 납세고지 중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고, 가산세 부과처분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취득세 등 납부고지 또는 체납세액 납부고지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새로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절차에서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조세심판원도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로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도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단지 그 청구취지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판단대상은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있다[1].

2)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증명 서류를 '화해조서·인낙조서(제1호)' 및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제2호)'로 제한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

1)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가산세의 근거나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새로 고지하여 가산세 부과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공정증서 등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등 참조).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담당 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이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별지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